

백영화 선임연구위원

### 요 약

2023년에 총 1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 중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되었음. 나머지 15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손해사정제도 개선,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제재의 합리화,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이 있음

- 2023년에 총 16건(정무위원장 대안 1건, 정부 발의 1건 및 의원 발의 14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음
  -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제2124605호)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1)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3년 10월 24일 공포되었음
    - 개정 보험업법에 의하면 소비자의 요청 시 요양기관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담함<sup>2)</sup>
  - 나머지 15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이하에서는 해당 1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음
- 정부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제도 완화,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 확대,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과태료 조항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제2122838호)
  -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이외의 자를 위한 보험 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완화하여,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그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에 따라 보험회사가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특정 상품만을 취급하는 자회사로서는 전속 보험설계사를 두기 어려우므로 모자회사 방식의 교차모집을 허용하려는 취지임<sup>3)</sup>
  - 정부안에서는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 및 보험회사 간의 분쟁의 자율 조정을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현재 금융 민원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1) 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하여 발의되었던 전재수 의원안(의안번호 제2102141호), 고용진 의원안(의안번호 제2104447호), 김병욱 의원안(의안번호 제2109414호), 정청래 의원안(의안번호 제2109937호), 윤창현 의원안(의안번호 제2102552호)의 5건은 대안반영폐기되었음

2) 백영화(2023),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 『KIRI 보험법리뷰』, 보험연구원

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22. 11. 21), “보험산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와 분쟁의 자율 조정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 분산을 통해 민원 처리의 신속성·적절성을 제고하고 보험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정부안은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제안하고 있음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법 위반행위의 경중과 과징금 규모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예: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금을 부지급한 사안에서, 부지급 보험금액의 규모가 큰 보험회사보다 연간 수입보험료 규모가 큰 보험회사가 더 높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됨)
  - 이에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의 경우를 ① 기초서류 기재사항 중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② 그 밖의 경우로 나누어, ①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이하', ②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하는 내용임
- 정부안에서는 일부 과태료 조항도 정비하고자 함
  - 현행 보험업법상 제재 조항이 없었던 ① 보험회사가 자회사 업무의 추가·변경에 대해 승인받지 않거나 신고·보고하지 않은 경우, ②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가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
  - 현행 보험업법은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을 과소·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과소하게 계상하거나 고의로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과실에 의한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의 과다 적립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 등에 관한 제재의 합리화와 관련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들이 발의됨(① 김한규 의원안, 제2120711호, ② 송석준 의원안, 제2120587호, ③ 박수영 의원안, 제2120049호)

- 김한규 의원안은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제안함
  -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을 현행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하'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발생한 피해 금액 이하'로 변경하자는 것임
  - 위에서 살펴본 정부안과 취지는 동일하나, 정부안의 경우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의 경우를 ① 기초서류 기재사항 중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② 그 밖의 경우로 나누어 ①에 대해서만 미지급 보험금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데 반하여, 김한규 의원안은 모든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소비자 피해 금액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송석준 의원안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합리화를 내용으로 함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로,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중제재에 대해 5년이라는 기산점을 도입함으로써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누적하여 받은 경우만을 가중제재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임
  - 또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나 보험중개사·보험대리점의 임직원과 같이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주의·경고·문책 등의 경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는 내용임
- 박수영 의원안은 보험사기 확정판결 시 보험설계사 등의 자격 제한에 관한 내용임
  -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법 또는 금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sup>4)</sup>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데,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나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박수영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의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을 받은 경우도 보험설계사 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아울러 보험설계사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도 신설하고자 함

○ 손해사정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됨(① 이용우 의원안, 제2121377호, ② 이장섭  
의원안, 제2121412호, ③ 양정숙 의원안, 제2121626호, ④ 전해철 의원안, 제2124729호)

- 이용우 의원안에서는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개정 사항들을 제안하고 있음
  - 손해사정업무가 수행되는 방식에 따라 ①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②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③ 보험회사가 외부의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 보험회사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표 1〉 유형별 준수사항(이용우 의원안)

| 구분                     | 보험회사의 주요 준수사항  |   |
|------------------------|--|---|
| 보험계약자 등의<br>손해사정사 선임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 충족 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는<br/>손해사정사를 수용해야 함</li> </ul>   |   |
| 손해사정업무<br>직접 수행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li> <li>•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li> <li>• 손해사정서 작성 시 지체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br/>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 줄 것</li> <li>•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br/>준수할 것</li> </ul> |   |
| 손해사정업무<br>외부 위탁 시      | 준<br>수<br>사<br>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업무위탁기준을<br/>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li> <li>•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인<br/>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 선정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선정 결과를 이사회에<br/>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li> <li>•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br/>사항을 준수할 것</li> </ul> |
|                        | 금<br>지<br>사<br>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br/>강요하는 행위</li> <li>•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전부<br/>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li> <li>•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한 손해사정업무에 개입하는 행위</li> <l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li> </ul>                                 |

4)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에게 소속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손해사정업자에게 경영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부과함
-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는 과대·허위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의 위반 시 과태료 대상으로 함
-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금지행위에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며, 금지 행위 관련 조항에서 손해사정사의 범위에 손해사정 보조인을 포함시킴
- 이장섭 의원은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을 제한하는 내용임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과 관련하여, 연도별로 전체 손해사정 건수 중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손해사정(이른바 ‘자기손해사정’) 건수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함
  - 또한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에 있어서 해당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액·보험금을 과소하게 사정하는 등 보험계약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의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함
- 양정숙 의원은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손해사정서의 교부 지체, 정당한 사유 없는 손해사정업무 지연이나 불충분한 조사에 의한 손해액·보험금 산정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는 내용임

〈표 2〉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의무 위반 시 제재의 내용

| 현행 보험업법상<br>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의무 또는 금지사항                                   | 제재의 내용                                  |   |   |
|--|---|---|---|
|  | 현행                                      | 정부안·<br>이용우 의원안                         | 양정숙 의원안                                 |
| 손해사정서 교부 및 중요 내용 안내(§189②)   | 제재 없음                                   | 제재 없음                                   | 과태료<br>(5백만 원 이하)                       |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br>(§189③, i)                            | 형사처벌<br>(1년 이하 징역<br>또는 1천만 원<br>이하 벌금) | 형사처벌<br>(1년 이하 징역<br>또는 1천만 원<br>이하 벌금) | 형사처벌<br>(1년 이하 징역<br>또는 1천만 원<br>이하 벌금) |
|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br>(§189③, ii)                      | 제재 없음                                   | 과태료<br>(1천만 원 이하)                       |   |
|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br>(§189③, iii)                      |   |   |   |
|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189③, iv) |   |   | 과태료<br>(5백만 원 이하)                       |

〈표 2〉 계속

| 현행 보험업법상<br>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의무 또는 금지사항   | 제재의 내용 |                   |                   |
|--|--------|-------------------|-------------------|
|  | 현행     | 정부안·<br>이용우 의원안   | 양정숙 의원안           |
|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189③, v) | 제재 없음  | 과태료<br>(1천만 원 이하) | 과태료<br>(5백만 원 이하) |
|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189③, vi)   |        |                   |                   |
|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189③, vii)  |        |                   |                   |

- 전해철 의원안은 전자문서 방식의 손해사정서 보정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임
  - 손해사정서의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하여 현재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전해철 의원안에서는 이를 보험업법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 방법과 관련하여 서면뿐만 아니라 서면·전자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인정하려는 것임
- 한편 위 4개의 법안 중 이용우 의원안, 이장섭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에 대해서는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되어, 해당 3개의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됨
  - 2023년 11월 28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손해사정제도 개선에 관한 이용우 의원안, 이장섭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에 대해<sup>5)</sup> 정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통합 조정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23년 11월 3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보고하여 가결되었음

○ 특별이익 규제 완화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됨(김희곤 의원안, 제2120401호)

- 현행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규제에 의하면 특별이익 중 금품의 경우에는 소액의 금품(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는 반면, 보험료 대납 유형의 특별이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가 없음
- 김희곤 의원안에서는 모집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보험상품에 한하여 보험회사가 총보험료 3만 원 범위 내에서 무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제안함
  -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액의 보험료 대납을 허용함으로써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임

○ 보험금 감액 또는 지급 거절 시 설명의무와 의료자문 관련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됨(이태규 의원안, 제2122177호)

-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반보험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설

5) 해당 3건뿐만 아니라 2023년 전에 발의되었던 박용진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2건), 박재호 의원안, 오기형 의원안도 포함하여 정무위원장 대안이 마련됨

명하여야 하는데, 이태규 의원안에서는 이에 추가하여 보험금의 감액 지급 또는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함

-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서류 심사, 의료자문 등의 심사를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심사기관의 명칭, 심사의 상세 내용 및 그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고, 의료자문 결과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함
  - 이와 관련해서는 자문의사가 직접 피보험자를 면담하도록 할 경우 자문의사의 의료자문 수행 기피 가능성, 피보험자의 민원 제기에 우려한 편향적인 의료자문 가능성, 허위 자문 결과 제출 유도를 통한 보험사기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sup>6)</sup>

#### ○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발의됨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윤영덕 의원안, 제2119732호)
-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제·개정함에 있어 보험설계사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최승재 의원안, 제2119848호)<sup>7)</sup>
- 보험회사의 고정금리 대출계약 체결 시 천재지변, 외환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금리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강병원 의원안, 제2120967호)
- 보험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고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매 분기마다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주호영 의원안, 제2121980호)
-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보험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강성희 의원안, 제2122742호)

---

6)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23. 11)

7) 손해사정제도 관련 법안들과 함께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대안반영폐기됨

〈표 3〉 2023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 번호 | 의안번호    | 의안명(대표발의자)                 | 제안일자        | 주요 내용  | 진행 상황             |
|----|---------|----------------------------|-------------|--|-------------------|
| 1  | 2119732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br>(윤영덕 의원)   | 2023. 2. 1  |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규정 강화   | 소관위심사             |
| 2  | 2119848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br>(최승재 의원)   | 2023. 2. 6  | • 보험협회의 보험설계사 관련 준수규약 제·개정 시 보험설계사 등 유관단체의 의견 수렴 의무화   | 소관위심사<br>(대안반영폐기) |
| 3  | 2120049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br>(박수영 의원)   | 2023. 2. 16 | • 보험사기 확정판결 시 보험설계사 등의 자격 제한 및 청문 절차 생략 허용   | 소관위심사             |
| 4  | 2120401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br>(김희곤 의원)   | 2023. 3. 3  | • 특별이익 규제 완화(총 보험료 3만 원 이하의 보험료 대납 허용)   | 소관위심사             |
| 5  | 2120587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br>(송석준 의원)   | 2023. 3. 13 | •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합리화(가중제재 시 기산점 도입,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징계 근거 마련)   | 소관위심사             |
| 6  | 2120711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br>(김한규 의원)   | 2023. 3. 16 | •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 변경(소비자 피해 금액 기준 도입)  | 소관위심사             |
| 7  | 2120967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br>(강병원 의원)   | 2023. 3. 28 | • 보험회사의 고정금리 대출계약 체결 시 금리 변경 사유 제한   | 소관위심사             |
| 8  | 2121377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br>(이용우 의원)   | 2023. 4. 14 | •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제고(손해사정업무 유형별 보험회사의 준수사항 규정,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의무화, 손해사정의 표시·광고 규제, 손해사정업자의 경영 현황 공시 의무화 등) | 소관위심사<br>(대안반영폐기) |
| 9  | 2121412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br>(이장섭 의원)   | 2023. 4. 17 | •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 제한  | 소관위심사<br>(대안반영폐기) |
| 10 | 2121626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br>(양정숙 의원)   | 2023. 4. 25 | •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 소관위심사<br>(대안반영폐기) |
| 11 | 2121980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br>(주호영 의원)   | 2023. 5. 12 |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정기적 안내 의무화   | 소관위심사             |
| 12 | 2122177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br>(이태규 의원)   | 2023. 5. 19 | • 보험금 감액 또는 지급 거절 시 설명의무 강화, 의료자문 관련 설명의무 강화   | 소관위심사             |
| 13 | 2122742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br>(강성희 의원)   | 2023. 6. 19 | •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의 채무관리요구권 도입   | 소관위심사             |
| 14 | 2122838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br>(정부)       | 2023. 6. 22 | •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제도 완화,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 확대(단순 보험민원 처리 및 분쟁의 자율 조정),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과태료 조항 정비   | 소관위심사             |
| 15 | 2124605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br>(정무위원장 대안) | 2023. 9. 21 | •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화   | 원안가결 및 공포         |
| 16 | 2124729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br>(전해철 의원)   | 2023. 9. 26 | • 전자문서 방식의 손해사정서 보정에 관한 근거 조항 마련 등   | 소관위심사             |